민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남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5249

발의연월일: 2022. 4. 13.

발 의 자:김남국·소병철·오영환

김영배 · 김두관 · 이수진(비)

이병훈 · 송재호 · 김용민

한준호 · 김병기 의원

(11일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(「민법」 제758조제1항 본문),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 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(「민법」 제758조제1항 단서), 이러한 내용의 규정을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준용하고 있음(「민법」 제758조제2항).

또한, 손해를 배상한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(「민법」 제758조제3항), 이러한 구상권에 관한 규정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의 하자 모두에 적용되고 있음.

그런데, 「민법」 제758조제3항은 "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

할 수 있다"라고 규정하여,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명문 규정을 실제 내용에 맞도록 수정하여, 국민이 문언상으로 도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도 구상권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758조제3항). 법률 제 호
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58조제3항 중 "第2項"을 "전2항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第758條(工作物等의 占有者, 所有	第758條(工作物等의 占有者, 所有
者의 責任)	者의 責任)
① ~ ② (생 략)	① ~ ② (현행과 같음)
③ <u>第2項</u> 의 境遇에 占有者 또	③ <u>전2항</u>
는 所有者는 그 損害의 原因에	
對한 責任있는 者에 對하여 求	
償權을 行使할 수 있다.	